

『구미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

심 사 보 고 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: 2013년 3월 25일

나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다. 회부일자 : 2013년 3월 26일

라. 상정일자 : 2013년 4월 4일

제176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
상정, 질의, 토론,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

가. 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유 영 명

나. 제안이유

-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부포상, 장관표창, 도지사 및 시장 표창에 대하여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토록하여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함.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다. 주요내용

- 공적심사위원회 설치(안 제12조의 2)
 -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
- 조례 문구 및 용어 정비
 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정비

라. 참고사항

- 「정부 표창 규정」, 「지방공무원법」

3. 검토보고의 요지 - 전문위원 이 대 회

○ 본 개정조례안은

-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던 정부포상, 장관표창, 도지사 및 시장 표창에 대하여 따로 공적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공적을 심사토록하여 공적사항의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,
-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, 길고 복잡한 문장을 간결하게 하는 등 시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자 함.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2조의2에 표창대상자의 공적을 심의하기 위하여 「구미시 공적심사위원회」를 설치하는 것으로써,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,
- 조례상의 문구 및 용어를 시민들이 알기 쉽게 정비하는 내용임.

○ 검토결과

- 「정부 표창 규정」 제13조에 의거 표창대상자에 대한 공적 심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포괄적으로 심의하던 것을 전문성을 갖춘 공적심사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과 시민들이 알기 쉽게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써,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
5. 토 론 요 지 : 생 략

6. 소수의견의 요지 : 없 음

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